구매설치 규격서

< 에스컬레이터 진입방지봉 구매설치 >

2016.06

B&G Metro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가 발주한 **“에스컬레이터 진입방지봉 구매설치” 에 적용**하며,발주처와 계약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 사이의 계약의 일부가 된다.

1.2 작업일반

(1) 본 규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KS 규격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 반입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기간 동안 타공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5)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철거재 및 제작 작업시 잔재 운반시 현장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

(7)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제작 설치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전, 후)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 (사진첩 1부, 별도 양식에 의거 사진 1부, 기타 필요에 의해 촬영한 사진은 CD-DISC에 저장 보관하여 1부 제출토록 한다.)

1.3 설계변경

(1) 계산 및 수량 착오 등에 의하여 공사내역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2) 공사 시공중 발주처의 승인 없는 임의의 공법변경 및 시공 등이 발생시 도급액에서 감액 조치한다.
단, 발주처의 공법개선 기술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수급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하여 절감된 공사비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이를 인정한다. 또한 공사여건에 따라 공종별 시공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3) 계약사항 변경은 "공사 완료후" 도면 및 현장여건에 의한 시공 정미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1.4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며, 공사 전반적인 사항의 책임자를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절대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발주처의 임의대로 공사를 해지할 수 있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수급자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3) 공사수행에 있어서 능력과 성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명하여 수급자는 3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1.5 수급자의 부담 항목

(1) 현장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아도 공사수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사항
(2)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3) 발주처가 지급한 자재의 분실, 오염, 훼손에 대한 관리, 발주처로부터 각종 자재를 인수한 후에 수급자의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오염, 훼손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변상, 구입,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

(1) 발주처는 발주처의 사정이나 감독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입찰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특정내역의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조기작업 및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당초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5) 현장 내 가설숙소는 인정치 않으며, 가설 사무실과 창고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위치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정진행상 발주처의 이전지시가 있을 시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6)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해당시)

수급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발주처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시 공 내 용

2-1 시공장소 및 범위

(1) 시공장소 : 사상역 ~ 평강역(등구역 제외 7개 역사 26개소)

(2) 시공범위

- 에스컬레이터 진입부 발판(플레이트) 타공 및 볼트체결
- 후렌지 및 볼트 체결 부위 방청 도장(외부 부식방지)
- 발판(플레이트) 들림 방지 작업(사고예방)

(3) 시공물량

항 목	길 이	수량	장소
진입방지봉	볼트,너트식 스탠볼라드 Ø127×H = 900×2T	26개소	사상,괘법르네시떼, 서부산유통지구,공항, 덕두,대저,평강역
들림방지 작업	볼트 체결	26개소	
안내표지	발주처와 별도 협의	52장	진입방지봉 부착

(4) 시공관련 참고도면

설치위치 / 작업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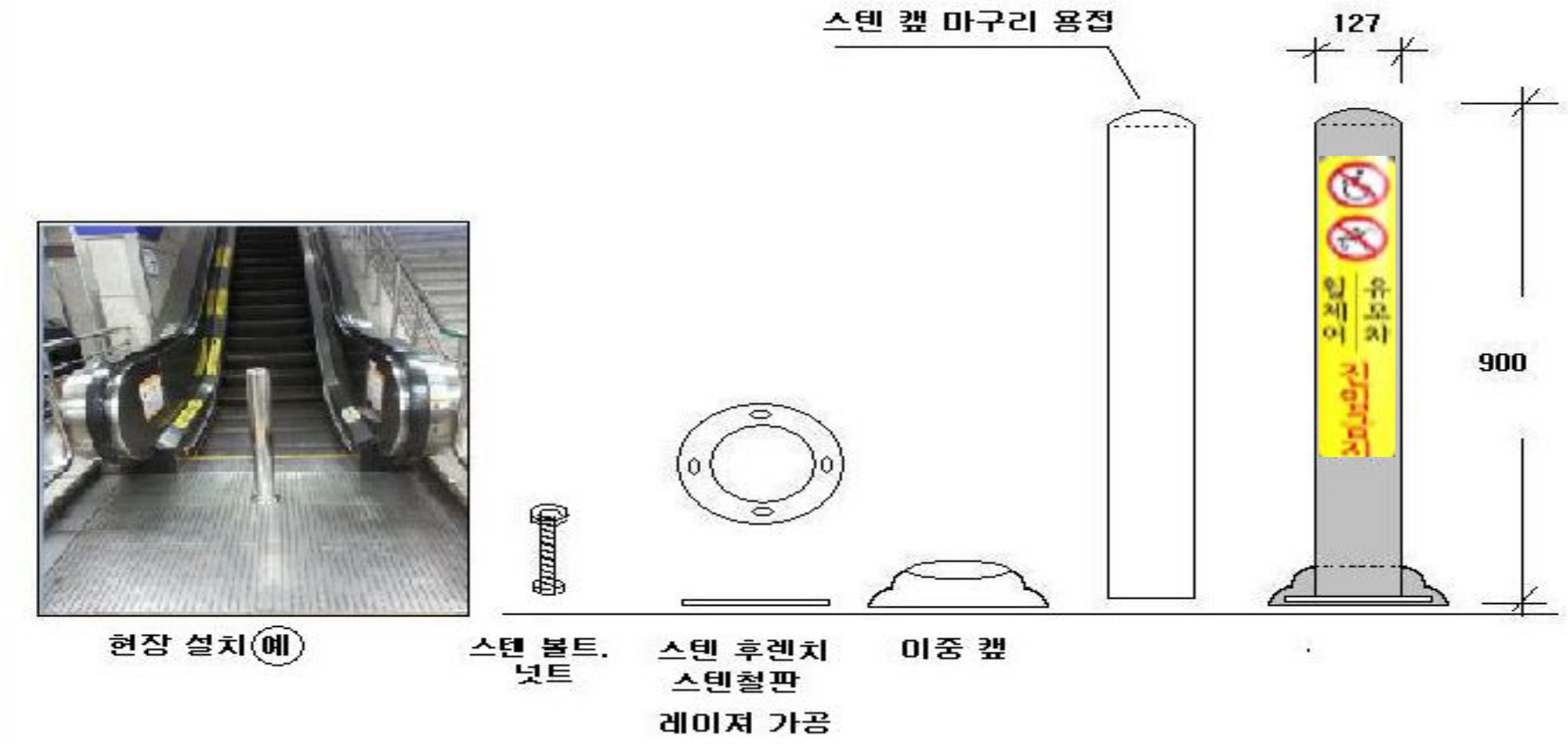

2-2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과 검사

2.2.1 재료

- 모든 재료(볼트, 너트포함)는 KS 승인규격이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한다.

2.2.2 시공시 주의사항

가. 납품 및 설치에 따른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치작업 전에 발주처 직원의 입회하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설치작업은 발주처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진입방지봉은 E/S 진행방향 전단에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진입방지봉은 E/S 발판중앙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하며 표면에 돌출부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려하게 표면처리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E/S 진입방지봉으로 인해 발판이 들리는 일이 없도록 E/S발판 모서리 4개소에 들림방지용 볼트를 기존 구조체에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볼트는 E/S 발판과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 E/S발판 표면에서 돌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설치장소가 실외가 대다수이므로 부식방지를 위해 진입방지봉 볼트체결 부위(후렌지 및 볼트,너트 등)는 방청도장을 시행한다.

아. 설치 및 납품내용 :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음

1) 26개소 E/S 진입방지봉 제작 및 설치

2) 진입방지봉 안내표지 52장 납품(디자인 발주처와 협의)

자. 설치 후에는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철거품 및 폐자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2.3 검사

가. 최종 납품 및 설치 후 수급인은 납품 및 설치가 규격서에 맞게 되었는지 여부를 발주처로부터 검사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안 할 경우 발주처의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다. 검사결과 본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이를 수정·보

완 후 다시 납품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완료후 자체검사 실시하고, 담당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

2.2.4 준공승인 및 대가지급

(1) 검사완료 후 수급인이 대금지급 의뢰를 발주처에게 요청하면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회계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

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

(1) 작업장에는 “작업중” 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2)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

(3)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될 시는 발주처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주처 또는 수급인의 손실을 전액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 절도, 불법단체 결성 난동, 작업방해 및 속칭 "사보타지"를 하는 자, 제반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추방해야한다. 수급인이 이를 불이행할 시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이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제4장 품질 보증 기간 (하자 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발주처의 회계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